

## 2025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5. 1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액)	[일반관리비]		[이윤]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노+경+일) x 율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- 소방·기타		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6	12.6	5.2	5.2	5억 미만	6.0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7~12개월 (365일)	12.6	12.6	5.2	5.2									5억 미만	안전관리비 대상액 <sup>주)</sup>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2.8	12.8	5.6	5.6														건축공사	0.07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3	12.3	5.5	5.5	5억 - 30억 미만	6.0	5.5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7~12개월 (365일)	12.4	12.4	5.5	5.5									5억 ~ 50억 미만	안전관리비 대상액 <sup>주)</sup>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2.5	12.5	5.8	5.8														건축공사	0.07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6	11.6	5.5	5.5	30억 - 50억 미만	5.0	5.0	12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5	5.5									5억 ~ 50억 미만	안전관리비 대상액 <sup>주)</sup>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1.8	11.8	5.9	5.9														건축공사	0.07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3	11.3	5.8	5.8	50억 ~ 100억 미만	5.0	4.5	10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7~12개월 (365일)	11.4	11.4	5.8	5.8									5억 ~ 50억 미만	안전관리비 대상액 <sup>주)</sup>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2	6.2														건축공사	0.07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6.4	6.4	100억 ~ 300억 미만	5.0	12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9	11.9	6.0	6.0	300억 ~ 500억 미만	5.0	10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3	11.3	5.8	5.8	500억 ~ 1000억 미만	5.0	9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5	11.5	6.2	6.2	1000억 이상	4.5	9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6.4	6.4	1000억 이상	4.5	9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
\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금, 도서인쇄비 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

**[산재보험료]**  
(노) x 3.56  
\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

**[고용보험료]**  
(노) x 율  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 | 율  
[1등급] 1200억 이상 | 1.57  
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 | 1.30  
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 | 1.13  
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 | 1.06  
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 | 1.03  
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 | 1.02  
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 | 1.01  
7등급 미만 | 1.01

\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시행령  
\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
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지적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 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

**[건강보험료]** (직노) x 3.545  
**[노인장기요양보험료]** (건강보험료) x 12.95  
**[연금보험료]** (직노) x 4.5  
\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

**[퇴직공제부금비]**  
(직노) x 2.3  
\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
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
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

**[환경보전비]**  
(직접공사비) x 율  
구분 | 율  
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 | 0.9  
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 | 0.4  
지하철 | 0.5  
철도 | 1.5  
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 | 0.5  
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| 1.8  
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| 0.8  
댐 | 1.1  
택지개발 | 0.6  
기타 토목(하천 등) | 0.8  
주택(재개발, 재건축) | 0.7  
주택(신축) | 0.3  
주택 외 건축 | 0.5  
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 | 0.3

**[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]**  
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  
·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요양방지시설 설치·운영 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
·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

\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

\*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

\*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국가유산 수리공사
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를 기준으로 함)

**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**  
(직접공사비) x 율  
구분 | 율  
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 | 0.9  
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 | 0.4  
지하철 | 0.5  
철도 | 1.5  
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 | 0.5  
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| 1.8  
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| 0.8  
댐 | 1.1  
택지개발 | 0.6  
기타 토목(하천 등) | 0.8  
주택(재개발, 재건축) | 0.7  
주택(신축) | 0.3  
주택 외 건축 | 0.5  
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 | 0.3

\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 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\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 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**[공사이행보증수수료]**  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 | 수수료  
70억 미만 | [직공비]x0.0141%  
70억 이상 ~ 120억 미만 | [1백만원+(직공비-75억)x0.0102%]  
120억 이상 ~ 250억 미만 | [1.5백만원+(직공비-130억)x0.0077%]  
250억 이상 ~ 500억 미만 | [2.4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063%]  
500억 이상 | [4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050%]

\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
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
- (시행령 제63조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 
- (시행령 제93조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

\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 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\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
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 
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

\* 건설공사의 종류  
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
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
- [중간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
· 고재방 열 공사 등 - 댐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방신설공사  
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방신설공사  
· 터널신설공사 등 - 도로, 철도, 지하철도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
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/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
·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  
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간건설공사에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 
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간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 
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

\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 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\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 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\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 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\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국가유산수리공사  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
\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설치 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
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 
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

\* 건설공사의 종류  
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
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
- [중간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
· 고재방 열 공사 등 - 댐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방신설공사  
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-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방신설공사  
· 터널신설공사 등 - 도로, 철도, 지하철도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
- [특수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 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/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
·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  
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간건설공사에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 
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간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 
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

\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 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\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 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\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 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\* 적용제외: 국가유산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 
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

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